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15호의2 서식] <개정 2022. 6. 7.>

행 정 기 관 명

수신

(경유)

제목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

납세자	성명(법인명)		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	
	상호(대표자)				사업자	등록번호		
	주소(영업소)							
법정신고일		기한 후 신고일						
결정사유								
구분		과세표준	산출세액	비과세/감면액 무신고		└세 납부지연	납부세액	
()세	당초 신고							
	결정							
	증감액							
	당초 신고							
()세	결정							
	증감액							

끝.

발 신 명 의직인	발	신	명	의 직인
-----------	---	---	---	-------------

기안자	직위(직급) 서명	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	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협조자					
시행	처리과명-연도별 일	[련번호(시행일)	접수	처리과명-연도별	일련번호(접수일)
우	도로명주소		/	/홈페이지 주소	
전화번호	호() 팩스반	년호() /	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	/ 공개 구분
					210mm×297mm(백상지 80a/m²